

비상경제장관회의
22-15-3
(공개)

공공조달 혁신방안

2022. 12. 14.

관계부처합동

순 서

I . 추진 배경	1
II . 공공조달 혁신방안	2
1. 전략적 조달정책 추진	3
2. 공공조달 주요 제도 개선	6
3. 불공정 조달관행 개혁	8
4. 거버넌스 및 조달 시스템 정립	10
III . 향후 계획	12

I . 추진 배경

□ 공공조달은 52만 기업과 6.3만 공공기관이 참여하는, 184조원¹⁾(‘21년, GDP 대비 9%)의 대규모 시장으로 국가재정과 국민경제에 큰 영향

* 공공조달 규모(조원): (‘17) 137.2 → (‘19) 160.0 → (‘21) 184.2

○ 대규모 공공구매력을 산업, 혁신, 환경 등 국가 주요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 수단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

⇒ 선진국은 ‘투명·공정’ 조달행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조달을 국가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‘전략적 조달(SPP)’ 본격화

□ 우리의 경우 전략적 활용은 매우 제한적이고, 공공조달의 비효율과 불합리한 조달관행에 대한 국민불신이 여전

○ 전략적 조달의 일환으로 ‘19년에 도입한 혁신조달제도는 그간 약 1.6조원(‘20~‘22.11월)* 투입에도 실질적 체감 효과는 미흡

* (혁신제품 구매실적) 4,716억원(‘20), 6,223억원(‘21), 5,469억원(‘22.11월)

▪ 여타 분야(산업, 환경 등)는 공공조달과의 연계 체계 미약

○ 지속적인 투명성·공정성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 갑질, 퇴직자의 업무개입 등 불합리한 조달행태의 근본적 혁신 필요

▪ 다수공급자 계약·우수조달물품 등 조달기업·수요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운영과정에서 비효율 및 불편* 야기

* ①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3년간 구매실적이 없는 제품이 전체의 48% 차지

② 우수조달물품 기지정 기업의 과점 형성 및 제품혁신 지연

⇒ 공공조달이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관행·제도에 대한 대혁신을 바탕으로 정책과의 연계 강화 필요

1) 조달청 공공조달통계시스템 집계금액(계약실적 기준)

※ 중기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집계금액: 154조원(지출실적 기준, 의무구매 비대상기관 실적 및 방위력개선비 등 제외)

Ⅱ. 공공조달 혁신방안

- ◇ 조달행정 혁신·전략적 활용을 통해 공공조달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, 국가적 목표 달성과 재정투입의 실효성 확보
- ◇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중심의 범부처 관리체계 구축

비
전

미래지향적 공공조달 체제 구축

목
표

- 비용관점의 조달가치를 넘어 **정책적 실행 수단으로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**
- 조달 전반의 관행·제도 정비로 **조달행정 신뢰 회복**

주요
과제

① 전략적 조달정책 추진

- ① (혁신) 혁신조달 내실화
- ② (산업) 공급망 위기 대응
- ③ (탄소중립) ESG 단계적 도입

② 공공조달 주요 제도 개선

- ① 쇼핑몰(MAS) 개선
- ② 우수조달물품 개선
- ③ 조달 특례 제도 정비

③ 불공정 조달관행 개혁

- ① 그림자 규제 혁신
- ② 유착고리 근절
- ③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

④ 거버넌스·시스템 정립

- ① 거버넌스 재정립
- ②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
- ③ 공공조달 통계 개편
- ④ 공공조달 역량 강화

조달정책심의위원회 중심의 범정부 관리체계 가동

1

전략적 조달정책 추진

① [혁신정책 지원: 혁신조달 내실화] 지정·평가·지원방식 개선 등

(1) 혁신제품 지정 개선

- **(현황)** 복잡한 지정체계*, 공공성 낮은 제품 지정 등 혁신제품 지정 과정에서 제도 보완 필요

* Fast Track I·II·III: ^(FT1)국가 R&D 결과물(부처 심사), ^(FT2)상용화 前 시제품(조달청 심사), ^(FT3)기존 인증제, 주요정책 연계형 제품 등(1차 부처→2차 기재부·조달청 심사)

- **(개선)** 지정체계 단순화, 공공 구매 수요 및 주요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기술 기업의 성장 촉진과 대국민서비스 개선 추진

- ① **(지정체계 정비 등)** 지정 단순화(3개→2개), 실효성 낮은 제품(수의·우선구매 기적용) 제외, 지정 후 혁신장터 등록 기간 단축* 등 추진

* 혁신제품(FTIII): ^(現)혁신제품 지정 후 규격 검토 → ^(改)규격 검토 후 혁신제품 지정

현재	개선
(FTI) 국가 R&D 결과물(부처 심사)	(유형I) 부처발굴형 (부처·조달청 심사)
(FTII) 상용화 前 시제품(조달청 심사)	(유형II) 시제품형 (조달청 심사)
(FTIII) 기존 인증제, 주요정책 연계형 제품 등 (1차 부처 → 2차 기재부·조달청 심사)	

- ② **(혁신제품의 공공성 강화)** 혁신제품 지정 심사시 공공성을 우선 심사하는 2단계 평가제*를 도입하고 수요기관도 심사에 참여

* (現) 공공성(40점), 혁신성(30점) 등 종합평가 → (改) 先공공성, 後혁신성 평가

- ③ **(전략적 혁신제품 지정)** 국민생명과 안전 등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연계가 가능한 제품은 혁신제품(유형I) 우선 지정

* 소방·경찰·해경 등 고위험 직업군 소요장비의 혁신제품 확대 효과

(2) 평가방식 개선

- **(현황)** 정량적 성과* 중심의 혁신구매 목표제 운영에 따라 기업 성장,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 등 질적 성과평가 미비

* 혁신구매목표(물품구매액 일정비율) : ^{'20}1%(4,173억원)→^{'21}0.8~1.6%(5,477억원)→^{'22}1~2%(6,853억원)

□ **(개선)** 혁신구매목표 운영에 있어 양 및 질적 성과평가의 균형을 추진하고 구매목표 등 합리화

① **(정성평가 방식 도입)** 국가기관의 경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중 기관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평가받도록 개선

* (現) '혁신구매(정량)+노력도(정성)' → (改) '혁신구매(정량), 혁신제품 구매 및 서비스 개선(정성)' 中 택1

② **(혁신구매실적 범위 축소)** 혁신제품 구매 외 실적으로 인정하는 혁신지향 공공구매(혁신활동 평가 및 실적 반영) 대폭 축소*

* 혁신제품 연계 가능성 낮은 혁신성 인증제품 구매, 포상금 실적 등 제외, 연계 가능성이 높은 R&D 결과물 구매·실증경비는 유지 검토

③ **(혁신구매목표* 조정)** 기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조정

* (現) 물품구매액의 일정 비율(‘20)1%→‘21)0.8~1.6%→‘22)1~2%)은 혁신제품 등 구매 → (改) 최소구매 비율 설정(시행령 개정), 초과 달성시 인센티브 부여 검토(포상·시범구매 등)

(3) 지원방식 개선

□ **(현황)** 혁신제품의 효과적 시범사용과 신속하고 지속적인 판로 확보 등을 거쳐 자생적 성장능력 확보를 지원하는 체계 마련 필요

□ **(개선)** 공공서비스 개선 및 기술 경쟁력 있는 혁신제품 지원 강화

① **(지정기간 연장)** 최초 혁신제품 지정기간(3년)이 만료(‘23.10월) 예정으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여부 등 검토*

* 공사계약 포함 혁신제품(설계반영 후 구매까지 장기간 소요), 수출지원 필요 제품 등

② **(시범구매사업* 전략적 활용)** 서비스 개선 효과, 전략적 지원 필요성을 종합 고려하여 ‘전략적 시범구매제**’ 운영

*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직접구매, 해당 기능에 부합하는 정부·공공기관 제공

** 3가지 기준(공공서비스 개선, 지원 필요성, 성장 가능성) 고려, 효율성 높은 기관 우선 지원

③ **(혁신제품 판매 지원)** 수요기관이 혁신제품을 별도 계약*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단가계약 체결

* 현재, 수요기관별로 업체의 예정가격 검토한 후 계약 체결

▪ 아울러, 해외조달시장 실증기회(test-bed) 제공* 및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등 혁신제품 해외진출 지원 강화

* 해외 법인·인프라를 갖춘 공공기관과 협력 및 시범구매 사업을 활용

② [산업정책 지원: 공급망 위기 대응] 국산 소재·부품기업 지원 등

(1) 국산 소재·부품 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강화

- **(현황)** 공공조달 물품 주요 소재·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심화
- **(개선)** 국내 소재·부품 기업 조달지원 등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 지속 확대
 - **(소재·부품 생산 기업 지원)** 중기간경쟁* 입찰시 가점부여, 외산 부품의 국산 대체 시 우수조달물품 규격변경 우대** 등 지원
 - * 중기부 지정제품(現 212개)은 '중소기업' 제품만 구매 가능
 - ** 우수조달물품의 외산 부품을 국산(직접개발 포함) 부품으로 대체시 규격서 변경 허용
 - ※ 우수조달물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조달청 단가계약을 통해 판로지원, 단, 규격 변경은 경미한 사항만 허용하여 계약규격과 다른 규격 납품시 부정당제재 처분
 - **(으뜸기업* 협업)** 혁신제품 지정심사시 으뜸기업의 수입대체 기술 활용 제품의 혁신성 보유 인정(혁신성 심사 완화)
 - *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성장 가능성 보유 기업(22.1월 43개 기업)

(2) 경제안보품목 중심, 전략적 공공비축 실시

- **(현황)** 요소수 사태 등 여러 분야의 다발적 공급망 충격 발생으로 비축 확대 등 안정적 공공조달의 역할 강화 필요
- **(개선)** 비철금속 비축량 확대*, 국민생활 밀접 품목 및 핵심 산업 물자로 대상 확대**(現)금속자원 중심→확대)경제안보품목)
 - * 비철금속 6종(알루미늄·구리·아연·납·주석·니켈) 비축량 50일→60일로 확대('23년~)
 - ** 활성탄(고도정수처리용), 요소(차량용), 염화칼슘(제설제용) 등
 - 위기사 긴급방출 등 공급망기본법(국회 논의중)과 연계*한 수급대응체계 구축
 - * 현행 비축물자 방출기준(조달청 훈령)을 공급망기본법상 위기상황과 연계

③ [탄소중립 지원] ESG 단계적 도입

- **(현황)** E·S·G 반영이 국제적 흐름이나, 공공조달은 환경·사회 요소의 일부만 고려하여 체계적 반영은 부족
- **(개선)**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조달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ESG 기반조성, 시범적용*을 거쳐 단계적 확대 검토
 - * ESG 관련 포상·우수 중소기업에 공공조달 입찰시 가점 부여 등 검토

2

공공조달 주요 제도 개선

① [종합쇼핑몰다수공급자 계약] 개선 이용자 중심 개편 기업부담 완화 등

* 품질·성능 유사 물품에 대해 (先)복수업체, 단가계약(by 조달청) → (後)수량주문(by 수요기관)

□ (현황) 수요기관이 다양한 제품을 신속히 구매할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(MAS) 제도를 도입('05년), 양적 규모 지속 성장

* 도입 초기 대비 10배 이상 성장('06년 982개사 1.5조원 → '21년 10,352개사 15.7조원)

○ 다만, 구매실적 없는 상품 증가* 등 운영 비효율과 더불어 조달기업과 계약 지연, 수요기관 선택권 제한** 등 불만 상존

* 계약체결 이후 3년간 실적이 없는 제품 수는 '21년 기준 전체(64.9만개)의 48%(31.0만개)

**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물품은 종합쇼핑몰에서만 구매(조달사업법 시행령)

□ (개선) 단기적 운영 효율화, 장기적 민간쇼핑몰 허용 검토

○ (이용자 중심 개편) 쇼핑몰 상품 정비* 및 납품기한 자율 설정, 계약 자동화시스템 및 표준계약소요일수 도입 등 조달 효율성·신속성 제고

* 3년간 실적없는 제품,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제품 등의 차기 계약 배제 등

○ (민간쇼핑몰 활용) 가격·품질이 평준화된 사무용품·전자제품, 2천만원 미만 소액 등은 민간쇼핑몰을 위탁사업자로 선정 검토

○ (기업부담 완화) 보증수수료, 대출이자 등이 저렴한 공제조합 설립, 계약보증금 인하 등을 통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

② [우수조달물품 개선] 지정 심사방식기준 개선, 과점구조 관리 등

* 성능·기술이 뛰어난 중기제조물품으로 조달청 선정(수의계약, 종합쇼핑몰 등록 등 혜택부여)

□ (현황) 고품질 물자 조달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혜택 안주, 독과점 등으로 품질 문제 지속 제기

○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조달물자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지만, 제품의 혁신성 부족, 기업 성장노력 유도에 한계

- **(개선)** 재지정 요건 강화, 장기기업 혜택 축소 등을 통해 우수 조달물품의 품질 제고 및 생산기업의 혁신성 향상 유도
- **(심사방식기준 개선)** 평가항목 정비 및 사전심사 도입*, 재지정 기준 강화** 등을 통해 유망기술 우수제품 지정 및 기업 혁신역량 향상 유도
 - * 기술 친화적으로 평가 배점·항목 정비하고 장기적으로 사전심사(PQ)제 도입
 - ** 장기 지정기업 심사통과 점수 상향 등 신규·기존기업 점수 차등 적용
- **(과점관리)** 우수조달물품의 수익적 혜택(단가계약 등) 축소*,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과점 구조 해소
 - *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수조달물품 점유비중 과도 품목 등은 단가계약 배제

③ **(조달 특례 제도 정비) 체계적 관리 방안 검토**

- **(현황)** 구매목표제, 우선구매, 입찰가점 등 각종 조달 특례 제도가 부처별로 운영중이나 산발적이고 체계적 관리 미흡
- **(개선)** 조달 특례 제도 관련 중요사항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(위원장: 경제부총리)를 통해 일관성 있게 조율하는 방안 검토

< 조달 특례 현황 >

- 1) **구매목표** : 중소기업(50%), 기술개발제품(15%), 여성기업(5%), 장애인기업(1%), 창업기업(8%), 중증장애인(1%), 장애인 표준 사업장(0.6%), NEP(20%) 등
- 2) **우선구매** : 개별 법령으로 구매를 권고하는 사회적기업 등
- 3) **입찰가점** : 총 320개(중복제거시 96종)에 달하는 신인도 평가항목(조달청 평가)

3

불공정 조달관행 개혁

① [그림자 규제 혁신] 조달규제 특성, 규제혁신 원칙 등

- **(현황)** 법령에 근거한 명시적 규제보다는 계약조건, 업무관행 등 조달현장에 숨어있는 '그림자 규제'가 비효율 및 불편 야기

* 연간 1,000만건에 이르는 조달거래는 개별 거래별로 입찰·평가·계약·검사·지급 등 복잡한 단계를 거치며, 다양한 조달현장의 절차를 세세하게 규율 곤란

- **(개선)** '현장'에서 '체감'할 수 있도록 조달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*하고, 완전 제거가 어렵다면 '대안' 도입

* ①불필요한 조달거래 부담 완화 및 절차 간소화, ②조달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 완화, ③신성장·신기술의 조달시장 진입 활성화

② [유착고리 근절] 입찰·평가시스템 개선, 수요기관 자율구매 확대 등

(1) 불공정 유착 요인 근절

- **(현황)** 공공조달은 조달기업간 과잉경쟁, 평가위원단 유착 관리 등 입찰 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개입 문제 상존

- **(개선)** 조달청 입찰·평가 과정에 불공정 개입 차단 구조로 전환

○ 조달청 평가위원단 확대(5천→1만명) 및 수요기관 공동 활용

○ 조달청 주관 대형공사 설계심의, 관급자재 선정·심의 개선

- **(설계심의)** 심사위원 풀 확대 및 심사 효율성·전문성을 강화 하되, 조달청 참여 비율 최소화 등 엄격한 통제 장치 마련

* 심사위원 후보 확대(現68명 → 改105명), 공사별 평가단(15~20명)에 조달청 직원 참여제한(10%↓) 등

- **(관급자재)** 조달청 계약심의 대행시 우수조달물품이 지정되는 불투명한 관급자재 선정 관행을 제로-베이스에서 재검토

* 우수조달물품 우대 폐지, 관급자재 선정심의회(위원장 포함 7인)를 외부 위원 중심 전환

[2] 재취업 퇴직자 관리 강화

- **(현황)** 발주기관 퇴직자를 통한 업무개입, 일감몰아주기 등 문제 제기
- **(개선)** 발주기관 재취업 퇴직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확산
 - **(중앙조달기관 퇴직자 관리)** 퇴직자 재취업 유관협회에 업무위탁 배제 및 퇴직자 접촉 관리 추진 (조달청)
 - 제3의 독립 전문기관을 위탁업무기관으로 공모·지정(중장기), 퇴직자 포함 모든 외부인 접촉에 대해 원칙적 신고·관리
 - * ① 별도 신고·보고 시스템 구축, ② 접촉 신고 대상 사무 범위 확대, ③ 유착사례 발생시 무관용원칙 조치(원스트라이크 아웃 등)
 - **(타 기관 확산)** 조달청 퇴직자 관리사례의 타 기관 확산 유도

[3] 수요기관 자율성 강화

- **(현황)** 조달청 계약 대행,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 구매 등은 수요기관의 구매 자율성과 신속한 계약체결 보장 필요
- **(개선)** 국가기관의 조달청 발주의무 규모*를 축소**하는 등 수요기관의 구매 자율성 단계적 확대
 - * (국가기관) 물품·용역 1억원, 공사 30억원 이상('98년~) / (지자체) 전면 자율구매('10년)
 - ** (물품·용역) 現1억원→'24)3억원→'26)5억원 / (공사) 現30억원→'24)50억원→'26)100억원

[3] [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] 조사 내실화, 불공정 행위 엄격 대응 등

- **(현황)** 불량 납품 등 조달업체 관리 소홀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, 적발 시에도 조달업체의 제재 회피 등 문제 상존
- **(개선)** 국세청 과세정보 연계를 통해 위반 징후* 분석·조사 등 조달업체 조사기법 선진화 추진
 - * 조달업체의 매입·매출자료 분석을 통해 원가 부풀리기, 원산지 위반 등 포착
 - 집행정지를 통해 편법적* 조달시장 참여시 명단공표, 부담금 부과 등 유무형 불이익 방안 마련
 - * 부정당제재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후 발주가 뜸해지는 시기에 가처분 소송 취하 (집행정지 신청시 81% 인용 → 본안소송 승소 20% 최근 5년간 집행정지 중 조달청에서 2조 6천억원 상당 수주)

1 [공공조달 거버넌스 재정립] 공공조달 총괄·조정 기능 강화 등

(1)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총괄·조정 기능 강화

- **(현황)** 조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‘조달정책심의위원회’를 운영(‘20.10월~)중이나, 혁신조달 정책 중심으로 운영
- **(개선)** 체계적·전략적 조달정책 수립·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해 ‘조달정책심의위원회(위원장: 경제부총리)’의 기능 강화
 - **(정책 총괄·조정 기능 강화)** 공공조달 시장에 영향이 있는 주요 사항*은 원칙적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책 조율
 - * (예) 수의계약 대상 조정, 우선·의무 구매, 전자조달시스템 신설·통폐합 등
 - **(위원회 실무 지원 강화)** 위원회 실무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(기재부·조달청 등) 상시적 협의체 구성 및 관련 조직·인력 보강

(2) 공공조달 관련 법체계 정비

- **(현황)** 조달·계약 관련 다수 법령*이 운영 중이나, 공공조달의 체계적 정책역할을 정립하는 법체계 부재

* 중소기업, 여성·장애인기업, 친환경기업, 상생협력 등 각 부처 소관 법령에 공공조달 관련 규정 산재 → 조달제도·정책 간 중복 등 실효성 확보 의문

※ 【참고】 조달 관련 다수 법령·지원제도로 인한 문제 사례

- ▶ (기관)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법적 의무구매(기술개발제품/여성기업/중증장애인기업 목표 등) 이행
→ 혁신성·품질보다는 목표 달성에 용이한 제품 위주로 구매하여 서비스 질 저하
- ▶ (기업) 다수 법적인증 취득에 비용이 과도하여 신생 유망기업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

- **(개선)** 조달청이 수행하는 조달사업 중심의 「조달사업법」을 공공조달 기본법 성격으로 확대 개편 검토

* 기본법 포함 주요 내용(예시) : ❶(공공조달의 원칙) 재정부율성, 공정성, 전략적 공공조달 지원 등, ❷(공공조달정책 기본계획 수립) 공공조달정책 기본방향 포함, 5년단위, ❸(평가 및 조정) 공공조달·계약제도 성과평가 및 조정 등

② [공공조달 시스템 구축]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구축 등

- **(현황)**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* 및 공공기관 자체조달시스템(26개)과의 통합 필요성** 등이 제기

* '02년 개통한 나라장터는 시스템 수명주기가 다해 잦은 오류 및 장애가 발생

** 이용자 편의성, 비용·인력, 보안 등 효율성 측면에서 나라장터와의 통합필요성 대두

- **(개선)** 분산된 조달 관련 시스템 및 공공기관 자체 조달시스템을 차세대 나라장터시스템으로 개편·통합

- 종합쇼핑몰 전면개편 포함, 11개 시스템*을 기능별로 재구성 및 통합하여 사용자 접근성 향상 및 데이터 품질 제고

* 상품몰(쇼핑몰·벤처나라), 모바일(스마트나라장터), 조달평가(e-발주), 통계·데이터(빅데이터·개방포털·온통조달·DW), 민간개방조달시스템(누리장터), 내부시스템(EDI·계약이행)

- 이용자 편의성, 비용·인력 절감 등 측면에서 23개*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조달시스템과의 통합 추진

* 26개 중 법적 근거 보유 3개 기관(방사청, 농유평, 교직원공제회) 제외

③ [공공조달 통계 개편] 집계주체 일원화, 정책효과 분석 강화 등

- **(현황)** 공공조달 통계를 조달청, 중기부에서 각기 다른 기준과 방식으로 집계·발표*함에 따라 통계 신뢰성 저하 및 정책적 활용 혼선

* (조달청) (근거) 조달사업법, (수집정보) 공공기관 계약정보(시스템 자동), (21년 공공조달규모) **184.2조원**
(중기부) (근거) 판로지원법, (수집정보) 공공기관 지출정보(수기 입력), (21년 공공구매실적) **154.2조원**

- **(개선)** 조달통계 주체 조달청으로 일원화, 분석 역량 강화

- **(집계주체 일원화)** 조달관련 통계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하여 계약·지출통계 집계를 조달청이 일괄 수행(조달사업법 개정)
- **(조달정책효과 분석)** 조달기업 과세정보 등과 연계(조달사업법 개정), 데이터 기반의 조달정책 효과 분석 체계 구축

④ [공공조달 역량 강화] 전문연구기관 지정, 전문인력 양성 등

- **(전문연구기관)** 공공조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공공조달 혁신을 위한 기초연구·정책개발 수행 강화

- **(전문인력 양성)** 상품등록 등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장기 검토(현재 비전문 컨설팅업체 등 의존)

Ⅲ. 향후 계획

- 조달정책심의위원회(분과위원회* 포함) 및 실무위원회를 통해 세부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·관리

* 공공수요발굴위원회,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(위원장: 기재부 제2차관)

주요 내용	일정	소관 부처
1. 전략적 조달정책 추진		
① 혁신정책 지원: 혁신조달 내실화		
- 혁신제품 지정체계 정비	'23~	기재부·조달청·각부처
- 혁신제품 2단계 평가제 도입(공공성 강화)	'23~	조달청
- 혁신구매 목표제 개선(정성평가 방식 도입, 혁신지향 공공구매 축소, 혁신구매목표 조정 등)	'23~	기재부·조달청
-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)	'23.10	기재부
-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개선	'23~	조달청
- 혁신제품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단가계약 추진	'23~	조달청
- 혁신제품 수출 지원	'23.~	조달청
② 산업정책 지원: 공급망 위기 대응		
- 소재·부품 생산 중소기업의 중기간경쟁 입찰시 가점	'23~	중기부
- 우수조달물품의 외산 부품을 국내산으로 대체시 규격서 변경 허용	'23~	조달청
- 으뜸기업 협업 제품 등을 혁신제품으로 연계	'23~	기재부·조달청·산업부
- 비철금속 비축량 확대 등	'23~	기재부·조달청
③ 탄소중립 지원		
- 공공조달에 ESG 시범적용	'23~	기재부·조달청
2. 공공조달 핵심 제도 개선		
① 쇼핑몰(다수공급자 계약, MAS) 개선		
- 수요중심의 상품관리, 신속계약	'23~	조달청
- 민간쇼핑몰 활용	'24~	기재부·조달청
- 쇼핑몰 계약보증금 인하	'23~	기재부·조달청

주요 내용	일정	소관 부처
② 우수조달물품 제도 개선		
- 지정심사 방식 개선	'23~	조달청
- 재지정 심사 강화, 과점관리 및 계약관리 등	'23~	조달청
③ 조달 특례 제도 정비		
- 조달특례 주요사항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조율 검토	'23~	기재부·조달청 등
3. 불공정 조달관행 개혁		
① 조달현장 그림자 규제 혁신		
- 조달관련 규제를 신속 개선 및 제거	'23~	조달청
② 유착고리 근절		
- 입찰·평가 과정에 불공정 개입 차단	'23~	조달청 등
- 퇴직자 재취업 관리 강화	'23~	전부처
- 국가기관 자율구매 범위 확대(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)	'24~	기재부·조달청
③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		
- 불공정 조사 행위 내실화(조달사업법 개정)	'24~	기재부·조달청
4. 거버넌스 및 조달 시스템 정립		
① 공공조달 거버넌스 재정립		
-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총괄 조정 기능 강화	'23~	기재부
- 공공조달 관련 법체계 정비(조달사업법 개정)	'24~	기재부
②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		
-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구축 및 자체시스템 통합	'25~	조달청 등
③ 공공조달 통계 개편		
- 집계주체 일원화 및 조달정책 효과분석 등	'25~	기재부·중기부·조달청
④ 공공조달 역량 강화		
- 전문연구기관 지정(조달사업법 개정)	'24~	기재부·조달청
-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	'25~	기재부·조달청